성주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9년 8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수

1. 개정이유

○ 지역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단계별 출산 양육지원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

○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가 한다.

○ 성주아기보험 지원대상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소 등록 임부 및 당해연도 그 임부가 출산한 신생아 및 영유아로 한다.

나. 출산장려금 지원방법개선(안 제5조 제2항 및 제3항)

○ 자녀수에 관계없이 보건(지)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건강관리를 위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출산기념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첫임신축하금 : 10만원 1회 지원

○ 출산축하금 : 자녀수에 관계없이 30만원 1회 지원

○ 영아 양육지원금

-첫째아 : 월 10만원 1년간 지원

-둘째아 : 월 20만원 1년간 지원

-셋째아 이상 : 월 30만원 1년간 지원

-첫돌맞이 축하금 : 20만원 1회 지원

○ 성주아기보험 : 1회 20만원 이내 지원

3. 조례 개정안 : 붙임

4. 입법예고('09.07.10 ~ '09.07.30) **결과 :** 의견 없음

5.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4조 , 제8조, 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제8조

6. 참고사항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예산관련 : 예산부서와 협의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출산양육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 장려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의 현금을 말하며 첫 임신, 첫째, 둘째, 셋째아 이상 출산 축하금 및 양육비, 첫돌 축하금을 포함한다.
4.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5. “성주아기보험”이란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보험기관에 성주군을 당사자로 하는 단체보험가입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보험기관”이라 함은 성주아기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7. “다자녀 가정”이라 함은 셋째아 이상을 둔 가정을 말한다

제3조 (업무관장) 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는 보건소장이 관장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② 성주아기보험 지원대상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지)소 등록 임부 및 당해연도 그 임부가 출산한 신생아 및 영유아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미혼부, 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부모 모두가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및 위와 같은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두고 양육하는 경우(입양아도 포함)
2. 부 또는 모가 직장, 기타 생계의 사유로 부모 모두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위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 사유서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제5조 (지원금액)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증가 및 저출산 극복의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태아 이상일 경우 출산 순위에 따라 각각 차등 지원한다.

② 자녀수에 관계없이 보건(지)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출산기념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은 다음 각호에 의거 출생생존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 첫 임신 축하금 : 10만원 1회 지원
2. 출산 축하금 : 자녀수에 관계없이 30만원 1회 지원
3. 영아 양육 지원금
 - 첫째아 : 월10만원 1년간 지원
 - 둘째아 : 월20만원 1년간 지원
 - 셋째아 이상 : 월30만원 1년간 지원
4. 첫 돌맞이 축하금 : 20만원 1회 지원

④ 성주아기보험: 20만원 이내 1회 지원

⑤기타 다자녀 가정 우대를 위해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지원금의 신청인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이 경우에도 보호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② 신청인이 출생아의 출생신고 시 읍·면장은 민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토록 한 후 출생신고서와 동일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성주아기보험 가입지원에 있어서 보건소장은 당월 등록된 임부 및 보험에 가입한 임부가 출산한 신생아의 명단을 익월10일까지 보험사에 통보하여야한다.
④ 지원금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금 신청서 1부
2. 지원대상 제4조제3항의 경우
가.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호(제)적 등본(본적이 타시군인 경우에 한한다.)
나. 직업상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
다. 사실 거주인의 경우 주소지 이장 확인서 첨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예금통장 사본 1부
5. 임신 사실 확인서(진단서, 보건(지)소 등록번호) 단, 첫 임신 축하금 지원자에 한함
⑤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⑥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군 관내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기간
3.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여부
⑦ 지원대상 가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⑧ 각 보건지소장은 신청자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보건(지)소 임부등록여부
2. 기타 지원대상 여부
⑨ 읍·면사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⑩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14일 이내 신청인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 및 중단 등) ①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허위사실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 양육 지급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8조 (임산부 영유아등록관리) 보건소장은 지원금을 지급한 임산부,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법」제10조에 의한 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이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이 이 조례에 의한 지원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대장 등 비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읍·면장은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4호의 서식을 비치·배부하며, 보건소장은 지원금 접수대장 및 지급 대장인 별지 제5호 내지 별지 제9호 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첫 임신 축하금 신청서

<table>
<tr><td>임부성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세대주</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연락처</td><td>자택</td><td></td><td>휴대폰</td><td></td></tr>
<tr><td>분만예정일</td><td colspan="2"></td><td>출생일
(분만한경우)</td><td></td></tr>
<tr><td colspan="5">입 금 계 좌</td></tr>
<tr><td>은행명</td><td></td><td>계좌번호</td><td></td><td>예금주</td><td></td></tr>
<tr><td colspan="2">보건(지)소
임부등록관리번호</td><td colspan="2"></td><td>지원금액</td><td>만원</td></tr>
<tr><td colspan="6">위와 같이 첫 임신 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보건(지)소장 (직인)

2009 년 월 일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1부 (결혼여성이민자)
-통장사본1부.
※전화번호 필히 기재

성주군수 귀하</td></tr>
<tr><td>보건소장
검토의견</td><td colspan="5"></td></tr>
</table>

[별지 제2호 서식]

출산 축하금 신청서

<table>
<tr><td>신생아성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모 성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부 성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연락처</td><td>자택</td><td></td><td>휴대폰</td><td></td></tr>
<tr><td>분만장소</td><td colspan="2"></td><td>출생순위</td><td>첫째. 둘째. 셋째.
넷째이상</td></tr>
<tr><td colspan="5">입 금 계 좌</td></tr>
<tr><td>은행명</td><td></td><td>계좌번호</td><td></td><td>예금주</td><td></td></tr>
<tr><td colspan="2">보건(지)소 임부등록관리번호</td><td colspan="2"></td><td>지원금액</td><td>만원</td></tr>
<tr><td colspan="6">위와 같이 신생아 출산 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읍,면장 (직인)

2009 년 월 일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1부.
※전화번호 필히 기재

성주군수 귀하</td></tr>
<tr><td>보건소장
검토의견</td><td colspan="5"></td></tr>
</table>

[별지 제3호 서식]

영아 양육지원금신청서

<table>
<tr><td rowspan="4">출 생
영 아</td><td>성 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출생장소</td><td colspan="3"></td><td>출생일자</td><td></td></tr>
<tr><td>출생순위</td><td colspan="3">자녀 중 번째</td><td colspan="2">단태아,쌍태아,삼태아</td></tr>
<tr><td>부</td><td>성 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d colspan="2">관내거주여부</td></tr>
<tr><td>모</td><td>성 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d>여</td><td>부</td></tr>
<tr><td colspan="2">부 또는 모가 출생아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td><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부모이외의
보호자</td><td>성 명</td><td></td><td>주민등록
번 호</td><td></td><td>출생아와의
관 계</td><td></td></tr>
<tr><td>보호사유</td><td colspan="5"></td></tr>
<tr><td>연락처</td><td>자 택</td><td colspan="2"></td><td>휴대폰</td><td colspan="2"></td></tr>
<tr><td>입금계좌</td><td>은행명</td><td></td><td>계좌번호</td><td></td><td>예금주</td><td></td></tr>
</table>

위와 같이 영아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읍.면장 (직인)

2009년 월 일

※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1부)

※ 전화번호 필히 기재

※ 부 또는 모가 출생아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사실거주확인(리장)

성주군수 귀하

보건소장 검토의견	

[별지 제4호 서식]

첫 돌맞이 축하금 신청서

<table>
<tr><td>영유아 성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세대주</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연락처</td><td>자택</td><td colspan="2"></td><td>휴대폰</td><td></td></tr>
<tr><td colspan="6">입 금 계 좌</td></tr>
<tr><td>은행명</td><td></td><td>계좌번호</td><td colspan="2"></td><td>예금주</td></tr>
<tr><td colspan="3">전년도 출산·양육 축하금
지 급 번 호</td><td colspan="3">지급액</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6">위와 같이 첫 돌맞이 축하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읍.면장 (직인)

년 월 일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1부.
성주군수 귀하 ※전화번호 필히 기재</td></tr>
<tr><td>보건소장
검토의견</td><td colspan="5"></td></tr>
</table>

[별지 제5호 서식]

첫 임신 축하금 지원대장

연번	임부 성명	주민 번호	예금주	주 소	전화 번호	신청일	지급일	입금계좌

[별지 제6호 서식]

첫 돌맞이 축하금 지원대장

연번	영아 성명	주민 번호	예금주	주소	전화 번호	전년도 지원 번호	신청일	지급일	입금 계좌

[별지 제7호 서식]

출산 축하금 지원대장

연번	신생아 성명	주민번호	예금주	주소	전화번호	신청일	지급일	입금계좌

[별지 제8호 서식]

영아 양육지원금지원대장

연번	영아성명	주민번호	예금주	주소	전화번호	신청일	지급액	월별지급일												입금계좌(은행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별지 제9호 서식]

성주아기보험 관리대장

연번	주소	임부 성명	주민 번호	임부 등록일	분만 예정일	임신·출생 순위	산전·분만 병원	전화	출생아		보험기간	
									성명	주민 번호	성명	만료일